

서울특별시 성동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1096
----------	------

제출연월일: 2017. 4. .
제 출 자: 성동구청장

1. 제안이유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모범납세자에 대한 수수료 감면조항을 신설하고, 개정된 법령을 조례에 반영하며 수수료 내용을 알기 쉽게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상위법 개정사항 반영 (안 제6조제1항제3호, 제8호, 안 제6조제4항)
- 나.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모범납세자 수수료 감면규정을 신설
(안 제 제6조제1항제9호, 제10호, 제11호)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규
 - 1) 「지방자치법」 제137조(수수료), 제139조(사용료의 징수조례 등)
 - 2)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

3)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

4)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

5)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36조

6)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28조제2항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기 타

1) 입법예고(2017. 2. 23. ~ 2017. 3. 15.)

2) 규제심사 : 신설 또는 강화규제 없음

3) 부패영향평가: 특기사항 없음

4) 성별영향분석평가: 특기사항 없음

5)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서울특별시 성동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성동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제136조, 제137조 및 제139”를 “제137조 및 제139조”로, “의하여”를 “따라”로 한다.

제2조 중 “의하여”를 “따라”로 한다.

제3조의 제목 “(종류 및 요액)”을 “(종류 및 금액)”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요액”을 “금액”으로 한다.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대하여”를 “대해서”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되어있는 자로서”를 “되어 있고”로, “제한하여”를 “사람에 한정하며”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으로 등록된 자”를 “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이 신청하는 증명”으로, 같은 항 제3호 중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수급권자”를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가 신청하는 증명”으로, 같은 항 제4호부터 제6호까지 중 “의 규정에 의한”을 각각 “에 따라”로, “자”를 각각 “된 사람이 신청하는 증명”으로 하고, 같은 항 제7호 중 “의 규정에 의하여”를 “에 따라”로, “자가”를 “사람이”로 하고, 같은 항 제8호 중 “제56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36조에 따라”로 하며, 같은 항에 제9호부터 제11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적용대상자가 신청하는 증명
 10.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적용대상자가 신청하는 증명
 11. 「서울특별시 모범납세자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모범납세자가 신청하는 별표의 가목3)지방세 세목별 과세(납세)증명
- 제6조제2항제3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④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8조제2항에 따라 무인민원발급창구를 통한 증명민원의 수수료를 별표와 같이 면제·감면한다.
- 제8조 중 “관하여 필요”를 “필요”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별 표 》

1. 제증명 확인 발급사항(제45종)

종 목	단 위	수수료 금액	비고
가. 재산 및 지방세에 관한 증명(개정 2010.12.30.)			
1) 건축물 관리대장 무한 증명	1매	350원	
2) 공부의 등본, 초본, 하부원본 (환지예정 및 확정지적도 등을 포함한다.)	1매	350원	
3) 지방세 세목별 과세(납세)증명 (개정 2010.12.30.)	1건	800원	
나. 건축 및 주택에 관한 사항			
1) 건축허가 또는 건축준공 검사증명	1건	350원	
2) 시영주택 분양금 납부증명	1건	350원	
3) 무허가 건물 확인원	1건	350원	
다. 사실 및 실적에 관한 사항			
1) 공장등록 증명(개정 2008.5.30.)	1건	1,000원	
2) 생산실적 증명	1건	350원	
3) 실수요자 증명	1건	350원	
4) 공장저당법 제7조 증명	1건	350원	
5) 원자재(시설재) 증명	1건	350원	
6) 식품환경 영업허가(휴·폐업)사실 증명	1건	350원	
7) 의료기관 약국(휴·폐업)사실 증명	1건	350원	
라. 주소·신상 및 직무에 관한 증명 (개정 95.5.10.)			
1) 행정구역 명칭 변경증명	1건	350원	
2) 무적증명	1건	350원	
3) 제적기재사실 증명	1건	350원	
4) 부양사실 증명	1건	350원	
5) 국제결혼증명 발급 및 재발급(신설 95.5.10.)	1건	3,300원	

종 목	단 위	수수료 금액	비고
마. 주택 그리고 도시계획 및 지적에 관한 사항(개정 2005.5.30.)			
1) 환지증명 또는 환지예정지 증명	1필지	450원	연도별
2) 경계명시 측량(도로, 주거의 경계선, 계획선 건축 측량선)	1필지	5,500원	
3) 개별공시지가 확인서 (개정 2006.11.28.)	1필지	800원	
4) 토지이용계획확인서(흑백) (개정 2010.12.30.)	1필지	1,000원	
5) 토지이용계획확인서(컬러)	1필지	1,500원	
6) 개별주택가격확인서 (개정 2006. 11.28.)	1주택	800원	
7) 공동주택가격확인서 (개정 2006.11.28.)	1주택	800원	
바. 회계관계 증명			
1) 물품납품 실적증명 (개정 2001.2.26.)	1건	1,000원	
2) 공시준공기술 용역 및 공사도급 하자보증금 보관 확인증 (개정 2001. 2.26.)	1건	1,000원	
3) 일반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명 (개정 2001.2.26.)	1건	1,000원	
4) 물품 또는 공사 사실증명 (개정 2001.2.26.)	1건	1,000원	
5) 보상금 지불증명	1건	350원	
사. 자동차에 관한 증명			
1) 자동차 제증명	1건	1,000원	
아. 그 밖에 제증명 (개정 2013.2.21.)			
1) 그 밖에 사실공부 등에 의해 발급하는 증명 (개정 2013.2.21.)	1건	350원	4매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수 4매마다 100원을 더한다.
2) 주택임대차 계약서 확정일자 청구 (신설 97.9.30.)	1건	600원	
자. 공부열람			
1) 각종 공부열람	1시간	100원	초과료 10분당 100원

종 목	단 위	수수료 금액	비고
카. 무인민원발급창구에 의한 증명(신설 2015.7.9.)			
1) 주민등록 등본 · 초본	1매	무료	
2) 개별공시지가확인서	1필지	600원	
3) 토지이용계획확인서	1매	800원	
4) 토지(임야)대장	1면	400원	
	초과1장당	100원	
5) 건축물대장	1매	400원	
6) 자동차등록원부(갑 · 을)	1매	300원	
7) 건설기계등록원부(갑 · 을) - 서울시, 다른 시·도	1매	500원	
8) 지방세세목별과세증명서	1매	600원	
9) 가족관계증명원	1매	무료	
10) 성적증명서, 졸업증명서	1매	무료	
11) 검정고시 성적증명서, 졸업증명서	1매	300원	

2. 각종 인·허가 및 신고사항 (제61종)

종 목	단 위	수수료 금액	비고
가. 인·허가에 관한 사항			
1) 행정서사업 허가증 교부	1건	550원	
2) 도로하천부지점용(지하도, 지하상가, 노상주차장)허가	1건	1,000원	
3) 공유수면 점용허가	1건	무료	
4) 권리변경(재개발지구)행위 허가신청	1건	550원	
5) 사도개설허가 및 축조허가 신청	1건	550원	
6) 토지형질변경(택지조성)행위허가 신청	1건	2,000원	
7) 소음·진동 배출시설 설치허가 신청	1건	10,000원	
나. 신고 신청에 관한 사항(개정 2013.2.21.)			
1) 출판사 인쇄소 등록신고	1건	무료	
2) 이·미용업 개설 신고증 재교부	1건	무료	
3) 국·공유재산 대부신청			
가) 신규	1건	5,000원	
나) 갱신 또는 기간연장	1건	3,000원	
4) 국·공유재산 매수신청	1건	950원	
5) 사설시장 개설 및 경신 신청	1건	550원	
6) 시영주택(택지)양도 양수 소유권 이전 해지 승인 신청	1필지	550원	
7) 시영주택(증·개축)승인 신청	1건	550원	
8) 급수공사 신청	1건	550원	
9) 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등록 신청			
가) 법인인 중개업자(개정 2008. 5. 30.)	1건	30,000원	
나) 개인인 중개업자(개정 2008.5.30.)	1건	20,000원	

종 목	단 위	수수료 금액	비고
10) 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등록증 재교부신청(개인,법인) (개정 2010.12.30.)	1건	800원	
11) 부동산중개업 분사무소 설치신고	1건	10,000원	
12) 석유판매업(주유소)등록신청 (개정 2001.2.26.)	1건	20,000원	
13) 석유판매업(용제판매소)등록신청(개정 2001.2.26.)	1건	10,000원	
14) 건설기계저당등록(말소)신청(신설 2001.7.16.)	1건	1,000원	
15) 소음 · 진동 배출시설 설치신고	1건	5,000원	
16) 비료생산업의 등록신청 (개정 2013.2.21.)	1건	30,000원	
17) 비료수입업의 신고 (개정 2013.2.21.)	1건	20,000원	
다. 의료기관 등 개설에 관한 인 · 허가 및 신고 등 사항 (신설 94.9.13. 개정 2013.2.21.)			
1) 종합병원 개설허가	1건	100,000원	
2)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개설허가 (개정 2008.5.30.)	1건	100,000원	
3)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조산원, 안마시술소 또는 안마원개설 신고(개정 2008.5.30.)	1건	40,000원	
4)안경업소 개설등록 및 양도 · 양수신고(개정 98.1.10.)	1건	10,000원	
5) 치과기공소 개설등록 신청 및 양도 · 양수 신고(개정 1998.1.10. 2013.2.21.)	1건	10,000원	
6) 개설장소의 이전			
가)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신설 2008. 5. 30. 개정 2015. 7.9.)	1건	40,000원	
나)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조산원, 안마시술소 또는 안마원 (신설 2008.5.30. 개정 2015.37.9.)	1건	20,000원	
라. 공연장 등록에 관한 사항 (신설 2007.7.11. 개정 2013.2.21.)			
1) 공연장 등록 신청	1건	10,000원	
2) 공연장 등록사항 변경 신청	1건	5,000원	
마. 게임산업에 관한 허가신청 (신설 2007.7.11. 개정 2013.2.21.)			
1) 일반게임제공업 허가신청	1건	20,000원	

종 목	단 위	수수료 금액	비고
2) 일반게임제공업 허가사항 변경신청	1건	5,000원	
3) 게임제작업 · 게임배급업 등록신청	1건	20,000원	
4) 게임제작업 · 게임배급업 등록사항 변경신청	1건	5,000원	
5) 청소년게임제공업 · 인터넷컴퓨터 게임시설 제공업	1건	20,000원	
6) 청소년게임제공업 · 인터넷컴퓨터 게임시설 제공업 등록사항 변경 신청	1건	5,000원	
7) 복합유통게임제공업 등록신청	1건	20,000원	
8) 복합유통게임제공업 등록사항 변경신청	1건	5,000원	
9) 복합유통게임제공업 신고	1건	20,000원	
10) 복합유통게임제공업 신고사항 변경신고	1건	5,000원	
바. 음악산업에 관한 사항 (신설 2007.7.11. 개정 2013.2.21.)			
1) 온라인음악서비스제공업 신고	1건	20,000원	
2) 온라인음악서비스제공업 신고사항 변경신고	1건	10,000원	
3) 노래연습장업 등록신청	1건	20,000원	
4) 노래연습장업 등록사항 변경신청	1건	5,000원	
5) 음반 · 음악 영상물 제작업 또는 음반 · 음악 영상물 배급업 신고	1건	20,000원	
6) 음반 · 음악 영상물 제작업 또는 음반 · 음악영상물 배급업 변경신고	1건	10,000원	
사. 영화산업 및 비디오산업에 관한 사항 (신설 2007.7.11. 개정 2013.2.21.)			
1) 영화상영관 등록신청	1건	20,000원	
2) 영화상영관 변경등록 신청	1건	10,000원	
3) 비디오물시청제공업 등록신청	1건	20,000원	
4) 비디오물시청제공업 변경등록 신청	1건	5,000원	
5) 비디오물제작업 · 비디오물배급업 신고	1건	20,000원	

종 목	단 위	수수료 금액	비고
6) 비디오물제작업 · 비디오물배급업 변경신고	1건	10,000원	
7) 영화제작 · 수입 · 배급 · 상영업 신규신고	1건	20,000원	
8) 영화제작 · 수입 · 배급 · 상영업 변경신고	1건	10,000원	
아. 체육시설업의 신고(변경)에 관한 사항			
1) 체육시설업의 신고	1건	30,000원	
2) 체육시설업의 변경신고	1건	10,000원	
3. 옥외광고물 등의 표시허가 · 신고 · 옥외광고물 등 안전도 검사, 옥외광고업 등록수수료는 「서울특별시 성동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별표 4~6에 따른다.			
4. 개인정보의 열람 · 정정 및 복사수수료(제3종)			
가. 공공용지 점용관리			
1) 문서의 열람	1건 1회	100원	
2) 문서의 정정	1건	200원	
3) 문서의 복사	1매	100원	

5. 공공기관 행정정보공개 수수료

공개대상	공개방법 및 수수료	
	열람·시청	사본(종이출력물)·인화물·복제물
문서·대장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열람 - 1일 1시간 이내 : 무료 - 1시간 초과 시 30분마다 1,000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본(1매 기준) - A3 이상 300원 . 1매 초과마다 100원 - B4 이하 250원 . 1매 초과마다 50원
도면·카드·사진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열람 - 1일 1시간 이내 : 무료 - 1시간 초과 시 30분마다 1,000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본(1매 기준) - A3 이상 300원 . 1매 초과마다 100원 - B4 이하 250원 . 1매 초과마다 50원
녹음 테이프 (오디오 자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취 - 1건이 1개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개(60분 기준)마다 1,500원 - 여러 건이 1개로 이루어진 경우 . 1건(30분 기준)마다 700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복제 - 1건이 1개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개마다 5,000원 - 여러 건이 1개로 이루어진 경우 . 1건마다 3,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녹화 테이프 (비디오자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청 - 1편이 1롤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롤(60분 기준)마다 1,500원 - 여러 편이 1롤로 이루어진 경우 . 1편(30분 기준)마다 700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복제 - 1편이 1롤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롤마다 5,000원 - 여러 편이 1롤로 이루어진 경우 . 1편마다 3,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공 개 대 상	공 개 방 법 및 수 수 료	
	열람 · 시청	사본(중이출력물) · 인화물 · 복제물
영화필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청 - 1편이 1캔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캔(60분 기준)마다 3,500원 - 여러 편이 1캔으로 이루어진 경우 · 1캔(30분 기준)마다 2,000원 	
슬라이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청 - 1컷마다 200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복제 - 1컷마다 3,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마이크로 필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열람 - 1건(10컷 기준) 1회 : 500원 · 10컷 초과시 1컷마다 100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본(출력물 : 1매 기준) - A3 이상 300원 · 1매 초과마다 200원 - B4 이하 250원 · 1매초과마다 150원 ○ 복제 - 1롤마다 1,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사진필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열람 - 1매 : 200원 · 1매 초과마다 50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화(필름) - 1컷마다 500원 · 1매 초과시마다 3 " × 5 " 200원 5 " × 7 " 300원 8 " × 10 " 400원 ○ 복제(필름) - 1컷마다 6,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p>전자파일 <신설 2015.7.9.></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자파일(문서·도면·사진 등의 열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일 1시간 이내 : 무료 - 1시간 초과 시 30분마다 1,000원 ○ 전자파일(오디오자료·비디오자료)의 시청·청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편 : 1,500원 - 30분 초과 시 10분마다 500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본(종이출력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A3이상 300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장 초과마다 100원 - B4 이하 250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장 초과마다 50원 ○ 전자파일(문서·도면·사진 등의 복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건 1MB(메가바이트) 이내 : 무료 - 1MB초과 시 1MB마다 100원 (다만 10장마다 100원을 초과할 수 없음) - 정보공개 처리를 위하여 전자파일로의 변환 작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본(종이출력물) 수수료의 1/2로 산정
		<p>- 부분공개 처리를 위하여 지움 작업 및 전자파일로의 변환 작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본(종이출력물) 수수료와 동일하게 산정</p> <p>※ 매체비용은 별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자파일(오디오자료·비디오자료)의 복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건(700MB 기준)마다 5,000원 - 700MB 초과 시 350MB마다 2,500원 <p>※ 매체비용은 별도</p> <p>※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통하여 공개하는 경우에는 전자파일 복제의 경우를 적용하여 수수료를 산정한다.</p> <p>※ 사본 출력물 복제물을 만들 수 있는 전산장비 등이 없거나 도면 등이 A3규격을 초과하여 이를 복사할 장비가 없어 외부업체에 대행시키는 경우에는 청구인과 협의를 통하여 그 비용을 수수료에 포함하여 산정할 수 있다.</p> <p>※ 수수료 면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 17조제3항 해당 사항</p> <p>※ 수수료 중 100원 단위 미만 금액은 계산하지 아니한다.</p>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36조, 제137조 및 제139의 규정에 <u>의하여</u> 서울특별시 성동구에서 징수하는 수수료의 종류 및 금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적용) 수수료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u>의하여</u> 징수한다.</p> <p>제3조(종류 및 <u>요액</u>) 수수료를 징수할 사항 및 <u>요액</u>은 별표와 같이 한다.</p> <p>제6조(수수료의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명에 <u>대하여</u>는 그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다만, 우리구에 주민등록이 <u>되어있는</u> 자로서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u>자에 한하여</u>, 상업적 이용을 목적으로 하는 반복적 증명 발급은 제외한다.</p> <p>1. (생 략)</p>	<p>제1조(목적) ----- ----- <u>제137조 및 제139조</u>----- ----- <u>따라</u> ----- ----- ----- -----.</p> <p>제2조(적용) ----- ----- ----- <u>따라</u> ----- -----.</p> <p>제3조(종류 및 <u>금액</u>) 수수료를 징수할 사항 및 <u>금액</u>은 별표와 같이 한다.</p> <p>제6조(수수료의 감면) ① ----- ----- -- <u>대해서</u>----- -----. ----- <u>되어 있고</u> ----- ----- <u>사람에 한</u> <u>정하며</u>, ----- ----- -----.</p> <p>1. (현행과 같음)</p>

2.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으로 등록
된 자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5
조의 규정에 의한 수급권자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
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규
정에 의한 등록 및 결정자

5. 「참전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 및 결정자

6.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
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
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등
록 및 결정자

7.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
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 및 결정된 자가 관내에
서 신청하는 증명.

8.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5
6조의 규정에 의한 일반 동산
문화재의 등록신청 및 접수에
따른 증명

<신 설>

2. -----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이 신청하
는 증명

3. ----- 제2
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가 신
청하는 증명

4. -----
-----에 따
라 -----된 사람
이 신청하는 증명

5. -----
-----에 따라-----
-----된 사람이 신청하는 증명

6. -----

-----에 따라-----
-----된 사람이 신청하는 증명

7. -----
-----에 따라 -----
----- 사람이 -----
-----.

8.----- 제36
조에 따라 -----

9.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

<신 설>

<신 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광고물 등을 설치허가 또는 신고할 때에는 수수료를 면제한다.

- 1. 2. (생 략)
- 3.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생 략)

④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에 따라 무인민원발급 창구에 의한 증명민원의 수수료를 별표와 같이 면제·감면한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적용 대상자가 신청하는 증명

10.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적용대상자가 신청하는 증명

11. 「서울특별시 모범납세자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모범납세자가 신청하는 별표의 가목3)지방세 세목별 과세(납세)증명

② -----

-----.

- 1. 2. (현행과 같음)
- 3. 그 밖에 -----

③ (현행과 같음)

④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8조제2항에 따라 무인민원발급창구를 통한 증명민원의 수수료를 별표와 같이 면제·감면한다.

제8조(시행규칙) -----
필요-----.

서울특별시 성동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 해당사항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서울특별시 성동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11조제2항제1호에 따라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임

3. 미첨부 사유

상위규정에 적합하도록 조문을 정비하고, 감면규정 신설(「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작용대상자가 신청하는 증명,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적용대상자가 신청하는 증명, 「서울특별시 모범납세자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에 모범납세자가 신청하는 지방세 세목별 과세(납세)증명)에 따른 수수료 수입 감소는 미미할 것으로 예상됨

4. 작성자

성동구청 세무1과 최우영(☎2286-5324)

< 관 계 법 규 >

□ 지방자치법

제137조(수수료)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가 특정인을 위한 것이면 그 사무에 대하여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위임사무가 특정인을 위한 것이면 그 사무에 대하여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수수료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으로 한다. 다만, 법령에 달리 정하여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39조(사용료의 징수조례 등) ① 사용료·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다만, 국가가 지방자치단체나 그 기관에 위임한 사무와 자치사무의 수수료 중 전국적으로 통일할 필요가 있는 수수료에 관한 사항은 다른 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표준금액으로 징수하되, 지방자치단체가 다른 금액으로 징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표준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조례로 가감 조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2.3.21.>

② 사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료·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를 면한 자에 대하여는 그 징수를 면한 금액의 5배 이내의 과태료를, 공공시설을 부정사용한 자에 대하여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을 조례로 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 재판 및 집행 등의 절차에 관한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개정 2009.4.1.>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적용 대상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은 이 법에 따른 예우를 받는다. <개정 2011.8.4., 2015.12.22.>

1. 특수임무사망자 또는 행방불명자: 특수임무수행 또는 이와 관련한 교육훈련으로 인하여 사망한 사람 또는 행방불명으로 확인된 사람(특수임무수행 중 파견된 지역에서 체포된 사람을 포함한다)
2. 특수임무부상자: 특수임무수행 또는 이와 관련한 교육훈련으로 인하여 부상(질병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입은 사람으로서 그 부상 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4에 따른 상이등급(이하 "상이등급"이라 한다)으로 판정된 사람
3. 특수임무공로자: 특수임무수행을 하였거나 이와 관련한 교육훈련을 받은 사람 [전문개정 2008.3.28.]

□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적용 대상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제7조에 따라 등록이 된 자(이하 "5·18민주유공자"라 한다)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은 이 법에 따른 예우를 받는다. <개정 2015.12.22.>

1. 5·18민주화운동사망자 또는 행방불명자: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사람 또는 5·18민주화운동으로 인한 상이(질병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후유증으로 사망한 사람으로서, 「5·18민주

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상을 받은 사람

2. 5·18민주화운동부상자: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상이를 입은 사람으로서,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5항에 따른 장애등급(이하 "장애등급"이라 한다)의 판정을 받고 보상을 받은 사람

3. 그 밖의 5·18민주화운동희생자: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라 지원을 받은 사람

[전문개정 2008.3.28.]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4.12.30.>

1. "수급권자"란 이 법에 따른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을 말한다.
2. "수급자"란 이 법에 따른 급여를 받는 사람을 말한다.
3. "수급품"이란 이 법에 따라 수급자에게 지급하거나 대여하는 금전 또는 물품을 말한다.
4. "보장기관"이란 이 법에 따른 급여를 실시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말한다.
5. "부양의무자"란 수급권자를 부양할 책임이 있는 사람으로서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를 말한다. 다만, 사망한 1촌의 직계혈족의 배우자는 제외한다.

□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시행 2017.1.28.] [대통령령 제27810호, 2017.

1.26., 타법개정]

제36조(일반동산문화재의 범위) ① 법 제60조제1항에 따른 일반동산문화재의 범위는 회화, 조각, 석조물, 공예, 전적(典籍), 고문서, 서간(書簡), 서각(書刻), 근대매체, 고고자료, 자연사자료, 과학기술용구 및 민속자료, 외국문화재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일반동산문화재의 구체적인 범위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약칭: 민원처리법)

[시행 2016.2.12.][법률 제13459호, 2015.8.11., 전부개정]

제28조(무인민원발급창구를 이용한 민원문서의 발급) ① 행정기관의 장은 무인민원발급창구를 통하여 민원문서(다른 행정기관 소관의 민원문서를 포함한다)를 발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민원문서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발급할 수 있는 민원문서의 종류는 행정자치부장관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결정고시한다.

□ 모범납세자관련 자치구 수수료 징수 조례 개정 표준안 안내 (서울시 2016.8.9.)

□ 전자정부법

[시행 2016.2.12.] [법률 제13459호, 2015.8.11., 타법개정]

제7조(전자적 민원처리 신청 등) ① 행정기관등의 장(행정권한을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은 해당 기관에서 처리할 민원사항 등에 대하여 관계 법령(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및 규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서 문서·서면·서류 등의 종이문서로 신청, 신고 또는 제출 등(이하 "신청등"이라 한다)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도 전자문서로 신청등을 하게 할 수 있다.

② 행정기관등의 장은 민원사항 등을 처리할 때 그 처리결과를 관계 법령에서 문서·서면·서류 등의 종이문서로 통지, 통보 또는 고지 등(이하 "통지등"이라 한다)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도 민원인 본인이 원하거나 민원사항 등을 전자문서로 신청등을 하였을 때에는 이를 전자문서로 통지등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전자문서로 신청등 또는 통지등을 하는 경우 전자문서에 첨부되는 서류는 전자화문서로도 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전자문서로 신청등 또는 통지등을 한 경우에는 해당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등 또는 통지등을 한 것으로 본다.

⑤ 행정기관등의 장이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민원사항 등을 전자문서 또는 전자화문서로 신청등을 하게 하거나 통지등을 하는 경우에는 인터넷을 통하여 미리 그 민원사항 등의 신청등 또는 통지등의 종류와 처리절차를 국민에게 공표하여야 한다.

⑥ 전자화문서의 활용 및 진본성 확인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서울특별시 성동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 보고서

2017. 4. 28.

행정재무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17. 4. 10. 성동구청장

나. 회부일자: 2017. 4. 11.

다. 상정일자: 2017. 4. 21.

(제231회 임시회 개최중 제2차 행정재무위원회)

2. 제안개요

가. 제안설명: 기획재정국장

나. 제안이유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모범납세자에 대한 수수료 감면 조항을 신설하고, 개정된 법령을 조례에 반영하며 수수료 내용을 알기 쉽게 정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상위법 개정사항 반영 (안 제6조제1항제3호, 제8호, 안 제6조제4항)

나.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모범납세자 수수료 감면규정을 신설 (안 제 6조제1항제9호, 제10호, 제11호)

4. 참고사항

가. 관계법규

- 1) 「지방자치법」 제137조(수수료), 제139조(사용료의 징수조례 등)
- 2)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
- 3)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
- 4)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
- 5)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36조
- 6)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28조제2항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기 타

- 1) 입법예고(2017. 2. 23. ~ 2017. 3. 15.)
- 2) 규제심사 : 신설 또는 강화규제 없음
- 3) 부패영향평가: 특기사항 없음
- 4) 성별영향분석평가: 특기사항 없음
- 5)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5. 전문위원의 검토의견 요지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구에서 발급하는 제증명 수수료 감면대상에 '5.18 민주 유공자, 특수임무 유공자, 모범 납세자'를 추가하고, 수수료 감면 대상에 인용되는 관계법령 개정에 따라 불일치하는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기존 감면 대상자와의 형평성을 기하고 관계 법령과의 연계성을 체계화 하는 타당한 개정안으로 판단 됨

6. 질의 및 답변: 회의록 참조

7. 토론요지: 없음

8. 심사결과: 재석위원 6인 중 찬성 6인으로 원안가결 하였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